

論文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正會員 王 志 均**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in Korea

Jee Kyoon WANG**, *Regular Member*

要約 遞信部에서 直接 經營하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을 1982年 1月 1日을 期하여 韓國電氣通信公社가 專担하게 됨에 따라, 遞信部の 行政組織은 革新的으로 改定되리라 한다. 此際에, 通信科學을 專攻하는 立場에서 우리 나라 遞信行政의 核心이 될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監理의 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組織創造와 人事改革의 兩側面을 積極 究論함으로써 그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이 比較研究모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을 日本電信電話公社에 依한 營業과 郵政省에 依한 監理로써 模範的으로 運行하고 있는 日本國의 事例를 根거였으며, 國內外의 關係文獻과 最新의 資料에 依하여 考察하였다.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communications shall be remarkab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inauguration of Korea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which will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starting from on the 1st of January, 1982. On this occasion, I, as one of communication scientists,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which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s of Korea, particularly confined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With a view to make a comparative perspective, I took the model of Japanese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efficient performance by way of coordinating between business side of Corporation (N.T.T.) and regulatory side of the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documents.

1. 머리말 : 問題의 提起

우리는 待望의 80年代를 맞이하였으며 希望한 第五共和國의 進軍도 開始되었다. 새로운 躍進을 위한 적지 않은 改革이 進行되고 있는 바, 우리 國家의 中央行政組織에 對한 改正事業도 그 中의 하나로서 期待되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政府의 모든 機構은 縮小되고 公務員도 減量될 것이라고 한다. 特別, 遞信部는 電氣通信公社가 82年 1月 1日 發足되므로 交遞部에 들어

가게 되든지, 심지어는 不必要하게 될 것이라는 極言마저 있다!

行政의 民主化 및 能率化를 위하여 行政組織이 改革되는 것은 發展行政으로서 讚揚될 일이지만, 不合理한 縮小·減員의 斷行은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事前에 充分한 檢討가 慎重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의 자못 具體的인 報道에 의하면, 遞信部의 中央機構로서 計剛局·電務局 및 保全局은 廢止되고 電

*1981年 韓國通信學會 第5次 秋季學術會(1981年 10月 23日)의 發表論文임

**光云 工科大学 電子通信工学科
Dept. of Telecommunication
Kwang Woon University, Seoul, 132 Korea
論文番号: 81-1 (接受 1981. 9. 25)

1) 中央日報(1981. 8. 22) 記事: "行政기구 縮小개편", 遞信部에서 전신전화公社가 떨어져 나가고 交通部에서 철도공사가 떨어져 나가면 2部를 합쳐 交遞部로 만들고, 서울신문(1981. 8. 14) 記事: "政府기구 축소, 高位職 감축", 전기통신공사가 생길 경우 遞信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음.

氣通信政策局을 新設하며, 郵政局에서 맡아오던 換對替業務을 따로 떼어 專任하는 換對替局을 新設 및 外局이던 電波管理局을 內局으로 하리라 한다.³⁾

1980年 本 学会 秋季學術發表會議에서 筆者는 「遞信部の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電波管理局은 格上強化되어야 한다」라고 發表한 바 있다.⁴⁾

此際에, 上記 電氣通信政策局에 關하여 그의 發展方向을 提示할 立場에 있다고 筆者는 自認하며, 이후러 아직도 實現의 曙光이 비치지 않은듯한 電波監理行政의 強化 發展을 다시 한번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릇, 通信은 人體內의 神經體系(nervous system)에 比喩되므로 社會의 通信網은 國家의 動脈에 該當하며 國民은 通信없이는 現代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없게 되었다.⁵⁾

이와같이 重要한 通信에 對한 우리 國家行政을 大別하면, 郵便·電話·電信 等을 管理하는 遞信部의 行政과 新聞·(라디오)·TV等을 管掌하는 文化公報部의 行政이 된다.

따라서, 政府機構 縮小가 大命題라고 한다면, 通信行政이라는 大原則에서 우리 國家 通信의 總本山인 遞信部에 文公部의 上記(메스공) 部面을 果敢히 統合하는 試案도 나을 법 하다. 事實, 外國에서는 電子新聞(Electronic Press)이라 하여 家庭用(케시발리)로서 電送되는 新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다.⁶⁾

이와같이 通信의 <미디어>는 驚愕스럽게 發展되며, 通信衛星을 經由한 電子郵便(Electronic Mail),⁷⁾ Computer를 利用한 데이터通信, <디지털> 高速 圖像通信 等에 의하여 從來의 電信·電話라는 概念은 革新되었으니, 이를 管理하는 遞信部의 機構는 適當 改定되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 이를 或者는 T & T에

서 始作하여 C & C를 거쳐 D & D의 時代로 向하는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⁸⁾ 따라서, 이런 時代의 變遷과 이런 電氣通信 <미디어>에 關한 情報의 調査·分析·研究·活用 等の 政策遂行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實現이 우리 遞信部에는 곧 新設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使, 電氣通信에 關하여는 國際間의 緊密한 協力이 必然的이므로 1865年 5月 17日 人類 最初의 國際協力機構로서 万国電信聯合이 ிற룩되었기니와,⁹⁾ 이는 오늘날의 國際電氣通信聯合 (I.T.U.)으로서 우리 國家도 1952年 11月 31日 이에 加入한 바 있다.¹⁰⁾

電氣通信의 <미디어> 中에서도 電波는 그가 지닌 迅速性과 國境을 超越하는 傳播性으로 因하여 가장 國際性의 高차로 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國家의 對外通信은 거의 全部를 電波 <미디어>에 依하고 있으므로,¹¹⁾ 이 電波에 對한 行政은 우리 通信行政中에서 最優先視 되어야 할 部門이다. 뿐만아니라 온갖 手段으로써 南侵만을 노리고 있는 北傀가 I.T.U.에도 加入하여 間接侵略을 恣行하고 있으므로 國家安保上의 見地에서도 遞信部의 電波行政은 強化 對備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電氣通信政策와 電波管理의 두 部門은 遞信行政中의 代表 및 核心的인 機構로서 가장 研究되어야 할 價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近來, 行政의 價値 提高를 爲하여 行政의 民主化 및 行政의 能率化가 高揚되고 있는 바, 嚴密히 究明한다면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價値이고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價値임이 分明하며 이 目的價値는 手段價値와 一致됨이 理想的이라고 하겠다. 이 行政의 能率化 實現을 爲해 지는 많은 方法이 있겠지만, 比較行政論¹²⁾의 追求方法이 가장 科學的인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中進國인 우리 國家에서 遞信部의 組織改

3) 1980年 10月 24日 韓國通信學會 主催 學術세미나, 王志明 發表, “通信主管府의 行政組織에 對한 合理化 方案”, 韓國通信學會誌 第5卷, pp. 17~25.
 4) 三浦一郎, 通信政策의 課題와 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東京, 1974, p. 3.
 5) 國際通信電話, 國際通信文化研究社, 東京, 1981年 1号, p. 27, “電子新聞”.
 6) 서울신문(1980. 6. 18) 記事: “英國에 衛星배달부, 1분만에 加로 편지 電送, 國際通信電話: 前掲書, 1977年 6号, p. 35, 1970年에 米國에서 誕生した 電子郵便は 1977年には 取扱通數 約 2,500萬數에 達する.

7) 柏木輝彦, “電氣通信, 過去·未來”, 國際電信電話, 前掲書, 1981年 4月号, pp. 18~19, 電氣通信 次に来るものは T & T(電信·電話) から C & C(コンピュータ·データベース) を経て D & D(DDX+Database)의 時である.
 8) 朴觀叔, 新版 國際法, 法文社, 1956, p. 21, 万国電信聯合 (Universal Telegraphic Union)
 9) 遞信部, 電氣通信八十年史, 1966, 서울, pp. 813~814
 10) 白榮夫, 王志明: 世界通信交通地理, 電波科學社, 1978, 서울, pp. 5~92
 11) F. HEADY, 徐元宇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1976, 서울, pp. 15~64

부에 앞서서 必히 先進國의 當該 行政先例를 比較考察함이 順序이며 有益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接近方法은 文獻과 事例의 研究方法에 의한 比較分析을 取하되, 다만 世界의 最先進國인 美國과 東洋의 先進國인 日本國의 當該 行政事例를 標本으로서 調査코자 한다.

美國에 있어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한 民營이고 이의 規制도 委員會制¹²⁾에 의하고 있으므로 이제 電氣通信公社를 始作코자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未來의 指標라고나 할 수밖에 없다. 이에 反하여 日本國은 1952年 8月 1日 電信電話公社(N.T.T.)를 發足시켰고 郵政省에서 이를 監理하여 오고 있으므로¹³⁾ 우리에게는 가장 適切한 比較行政이라고 하여야 되겠다.

이제, 우리 나라의 遞信行政中 電氣通信과 電波管理의 發展 方向에 關하여 日本의 行政先例를 比較資料로 삼아 가장 接近된 建設的인 代案을 提論코자 한다.

이 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促求를 위한 勸導가 있기를 期待한다.

2. 電氣通信政策의 發展方向

1.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1) 電氣通信의 意義

電氣通信의 定義에 關하여는 電氣通信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¹⁴⁾ 條約優先主義¹⁵⁾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and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¹⁶⁾

日人 市橋良治氏는 이를 다음과 같이 分析 說明하고 있다. 즉, 「電氣通信이란,

① 方法…有線·無線·光線 또는 他의 電磁的方式

에 의하여

② 目的物…모든 種類의 記号·信號·文音·影像·音響 또는 情報를

③ 行爲…傳送하고, 發射하며 또는 受信하는 것이다.¹⁷⁾

或者는 이를 다시 附會하여 上記中 ①方法을 媒介, ②目的物을 客體, ③行爲를 主體(人間)이라고 解釋하고 더 나아가 이를 基礎理論으로 하여 遞信部를 電氣通信部로 呼稱한 後 ①方法→電氣通信技術局, ②客體→電氣通信情報局 및 ③行爲→電氣通信運用局으로 한의 理想的이라함은 意見도 있는 바, 歷史的 事實로서 日本에서는 電氣通信省¹⁸⁾이라함은 先例도 있었으므로 一理있는 該局 改革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 政策의 意義

政策이라는 名詞의 定義에 關하여는 몇 가지 學說이 있으나, 政策學의 觀點에서 “政策이란 當爲性(Desirability; Ough-to)에 立脚한 社會價值體系(Social Value System)의 變化를 通해서 形成되는 行動志向의 企圖이다”라고 함이¹⁹⁾ 가장 適正한 것 같다.

政策科學에서는 政策을 「政府·社會組織·企業·個人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目標의 樹立, 達成, 評價, 再樹立의 全過程에서 最小의 資源으로 最大의 結果를 予見할 수 있는 代案策을 選擇하는 行爲이다」라고 보고 있다.²⁰⁾

政策學이건 政策科學이건 間에, 政策에 關하여는 그 樹立의 過程(Process Analysis) 보다는 政策의 效果面(Impact Analysis)에 더 研究의 方向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라스웰>(LASSWELL)은 政策效果의 分析을 社會發展의 道具役割임을 強調하고 있는 바, 그의 政策決定의 方法과 模型은 다음 <表-1>과 같다.²¹⁾

(3)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通信政策論에는 그 內容으로부터 세 가지의 方向이 있더라 見解가 있다. 첫째, UNESCO通信政策論,

12) Rules and Reugulation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S.A.

13)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1979, 東京, p.21

14) 電氣通信法 第2條 第1号: 電氣通信 一 有線·無線·光線 및 其他의 電磁의 方式에 의하여 모든 種類의 符號·文音·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

15) 電氣通信法 第11條(國際電氣通信業務)

16)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 T. C, 1979, Geneva, by I.

T. U. 1-1

17) 市橋良治·國際電氣通信條約講義, 電氣通信協會, 1959, 東京, pp.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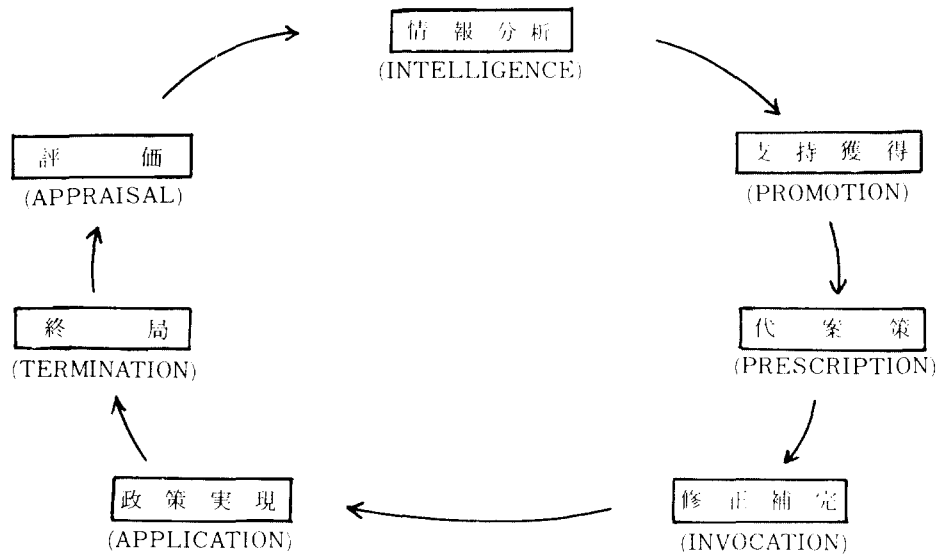
18)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前掲書, p.132, 遞信省의 分割(郵政省と 電氣通信省, 1946年 6月)

19) 前註 外 5人,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p.39

20) 崔平吉, 韓國의 政策科學, 延世大學校, 1981, p.1

21) 崔平吉, 上掲書, p.13

〈表1〉 LASSWELL의 政策決定의 段階圖



※ 資料 : (HAROLD D. LASSWELL,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문제, EUROPE型 通信政策論 제책, 美國型 通信政策論이 그것이다.²²⁾

통신技術의 進歩, 各 (미디어)의 役割·技能·重要性의 變化 等으로 因하여, 通信 (미디어)에 關한 法律·政策의 檢討 等에 主된 關心을 쏟고 있는 것이므로 美國型 通信政策論이다.

따라서, 電氣通信政策이란 上記中の 셋째 番인 美國型 通信政策論에 屬類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OMMUNICATIONS POLICY (미디어政策論) 이나 COMMUNICATION POLICY (抽象的인 政策論) 가 아닌 TELECOMMUNICATIONS POLICY (電氣通信(미디어)政策)인 것이다.

2. 電氣通信政策局의 進路

(1) 電氣通信政策機構의 來歷

政府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을 다루는 機關이 첫 登場한 것은, 1968年 12月 7日 提出된 (로스노우) 教授의 研究報告書에 따라 美國 大統領府內에 Office of Tel-communications Policy (O.T.P.)가 新設된 것이 先驅이다.²³⁾ 그러나 當時의 大統領 이었던

JHONSON氏가 NIXON氏로 交替되자 곧 이 機構는 商務省으로 移管되었는 바, 아마도 이는 通信을 通信機器 販賣産業으로만 좁게 處理한 事인 것으로 推定된다. 그 後 惹起되었던 Watergate 事件으로 因하여 (니슨) 大統領의 失脚을 가져온 通信秘密侵害事故) 이 機構의 大統領府 復元을 아쉽게 하는 것이다.

日本국은 1970年 6月 15日 郵政大臣 官房室에 通信政策課를 新設하여 그 밑에 調査係·企劃係·外國 調査係·情報産業 調査室 및 政策企劃官室을 두었었다. 이 課의 任務는 技術革新에 의한 通信(미디어)의 多樣化·情報化의 進展 等에 처하기 위하여, 通信行政 全般에 關한 基本的인 政策의 企劃, 이에 必要한 調査 및 研究에 關한 事務를 司掌하는 것이었다.²⁴⁾

특히 日本국의 上 述 事 實, 이 電 氣 通 信 政 策 課 는 1980年 7月 11日 電氣通信監理官室을 合쳐 電氣通信政策局으로 格上 以 規模를 擴大한 事實이다. 이 機構圖는 다음 (表-2)와 같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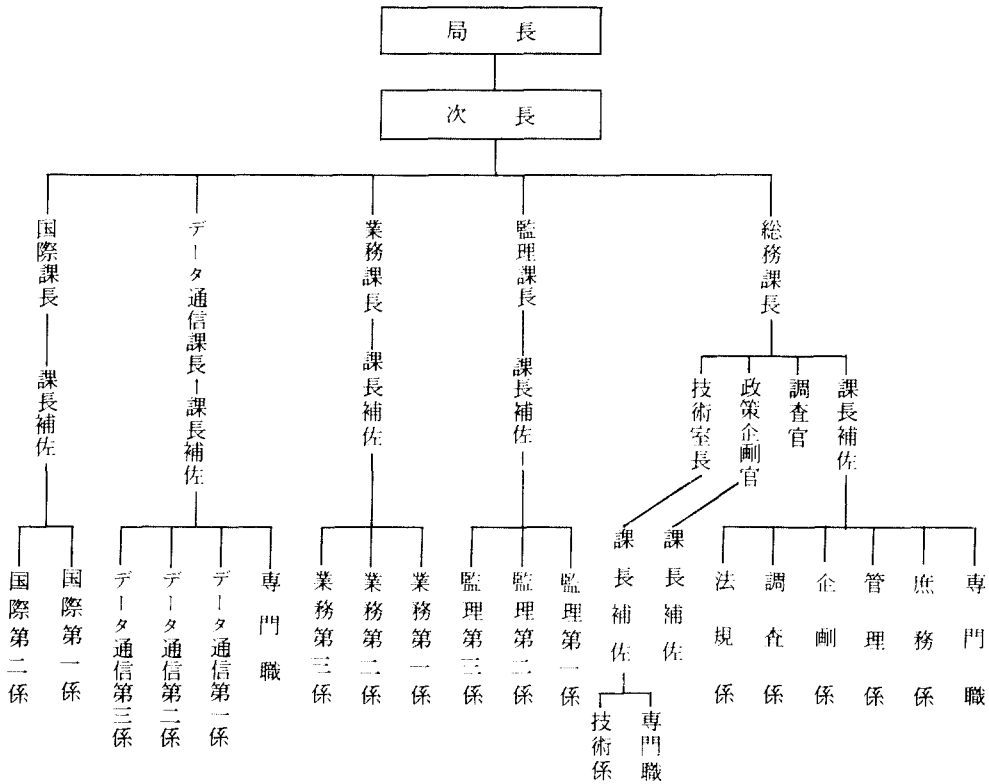
22) 電波時報, 電波振興會, 1980年 5月 号, 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東京, p.2

23) 三浦一郎, 前掲書, PP.94~95

24)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前掲書, p.26

25) 日本 郵政省組織令 및 日本 郵政省組織規程

(表2) 日本 電氣通信政策局 機構圖



※ 資料：電波時報，1980年 No.6 (P.37)

(2) 電氣通信政策局의 任務와 組織

日本 郵政省 設置法을 参考로 하여, 우리 나라 遞信部에 新設되어야 할 電氣通信政策局의 任務를 私案으로서 提示한다. 아울러 日本 郵政省組織令 및 同規程에 規定된 日本 電氣通信政策局內의 組織과 各任務를 調査하여 報告한다.

1) 電氣通信政策局의 任務(案)

電氣通信政策局은 다음 事務를 掌理한다. 다만, 電波管理局의 所掌事項은 除外한다.

- ① 電氣通信의 規律에 關한 政策의 企劃·立案 및 推進에 關한 일
- ② 電氣通信을 規律하고 監督하는 일
- ③ 國際電氣通信의 管理에 關한 國際的 締約의 商議와 締結 및 國際電氣通信聯合會 其他 機關과의 連絡에 關한 일
- ④ 通信保安에 關하여 規律하고 監理하는 일
- ⑤ 國家非常時에 對備하여 電氣通信의 體制 및

運用을 講究하고 訓練하는 일

- ⑥ 韓國電氣通信公社 및 遞信部 傘下 團體를 監理하는 일
- ⑦ 公共企業體等 勞動委員會에 對한 調停 및 仲裁의 請求에 關한 일(韓國電氣通信公社에 限한)
- ⑧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法令을 立案하고, 이를 實施하는 일
- ⑨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고, 이를 實施하는 일
- ⑩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研究 및 調査 또는 이를 部外의 研究 機關에 委託하는 일
- ⑪ 所部の 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關한 計劃案을 作成하는 일
- ⑫ 所部の 職員을 訓練하는 일
- ⑬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予算案을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基한 業務計劃을 實施하는 일

⑭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弘報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⑮ 前各号에 揭記한 일 以外에, 電氣通信에 關하여 遞信部의 權限으로서 法습이 定하는 事項을 處理하는 일

⑯ 前各号의 事務에 附帶하는 일

2) 日本國의 電氣通信政策局의 職務表

(가) 總務課

①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하여 綜合調整을 行하는 일

② 電氣通信의 規律에 關한 基本的인 政策의 企劃·立案 및 推進에 關한 일

③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關한 일

④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關한 일

⑤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中, 電氣通信에 關係되는 技術的事項에 關한 事務를 決定하는 일

⑥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研究 및 調査에 關한 管理를 하는 일

⑦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는 일

⑧ 所部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關한 計劃案을 作成하는 일

⑨ 所部職員을 訓練하는 일

⑩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予算案을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關한 業務計劃을 作成하는 일

⑪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關한 周知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⑫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로서 他課에 屬하지 않는 일

(나) 監理課

① 電信電話公社 및 國際電信電話株式會社의 監督 및 이에 關한 法습의 立案에 關한 일

② 電信電話設備의 擴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關한 債券의 發行條件 等の 決定을 하는 일

③ 電信電話公社 共濟組合에 關한 일

④ 公共企業體等 勞動委員會에 對한 調停 및 仲裁의 請求에 關한 일(N.T.T에 限한)

(다) 業務課

①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關한 일

② 電信電話設備의 擴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關

한 法律의 施行에 關한 일

③ 有線放送電話에 關한 法律의 施行에 關한 일

④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關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⑤ 前各号에 揭記한 以外에,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關한 일

(라) 데이터通信課

다만, 데이터通信에 關한 것에 限한다.

①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關한 일(技術 基準에 關한 것을 除外함)

②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關한 일

③ 電信電話設備의 擴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關한 法律의 施行에 關한 일

④ 電氣通信의 法律 및 監督에 關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⑤ 前各号에 揭記한 外에 電氣通信의 規律 및 監督에 關한 일

(마) 國際課

① 國際電氣通信의 管理에 關한 締約의 商議, 및 締結 및 國際電氣通信連合과 其他 機關과의 連絡에 關한 일

② 外國에 在在의 電氣通信事情의 研究 및 調査에 關하여, 其의 決定을 하는 일

3.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1. 電波管理의 意義

(1) 電波의 定義

電波라는 단말의 定義에 關하여는 우리 나라 電波管理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 國際法 優先主義²⁶ 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Radio Waves (Hertzian Waves) : The electro-magnetic waves of frequencies arbitrarily lower than 3,000 GHz, propagate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e;²⁷

日本 電波法에서 - 電波의 定義를 「人工의 導波體의 ない空間을 依據する 300萬 MHz 以下の 周波數의 電磁波」라고 規定하고 있다²⁸ 그러나 日本의 이 定義中의 300萬 MHz란 3,000 GHz의 값으로써 結局 同一한 周波數 範圍의 制限이 되지만, 「propagated in sp

26) 電波管理法, 第3條(電波에 關한 條約)

27) R.R. 前揭書

28) 日本 電波法 第2條(定義) 第1号

ace without artificial guide」에 該當된 번역에는 若干의 曖昧性이 있다.

이것을 우리 電波管理法에서는, 「電波란 人工的인 導引없이 空間을 傳播하는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數의 電磁波」라 하였었다. 「導引없이」가 아니라 「導引없는」이 옳으므로 이의 是正을 筆者가 指摘하였더니,²⁹ 이 定義中의 後段을 아예 削除하여 「電波란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數의 電磁波」라고 改定해 버렸다.

그러므로, 電波에 관한 우리나라의 定義는 곧 바로 삽아야 될 것으로 본다.

(2) 管理의 意義

管理는 「일을 맡아 다스림」³⁰의 뜻이므로 英語의 Management에 該當될 것 같다. 現在 電波管理局의 英名은 Radio Regulatory Office로 標記되어 있는 바, Regulatory는 「規定함」 또는 「統制함」의 뜻인 regulate에서 나온 單語인 것 같다. 英語 낱말에는 몇 가지의 뜻이 共存하므로 Radio Management Office보다는 Radio Regulatory Office가 官庁名의 印象을 품는다. 다만, 地方의 電波監視局을 電波監理局으로 改定³¹ 한 것은 語句上의 矛盾感이 있다. 辭典에서 監理는 「감독하고 관리함」³²이라 풀이되어 있는 바, 監理속에는 管理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局이 中央局을 감독하는 것 같이 보이기 쉽다.

此際에, 中央機構는 電波監理局으로, 地方機構는 各 地方 電波監理局으로, 各各 改稱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電波監理의 重要性

電波의 監理는 實로 國際法(國際電氣通信協約)³³에 淵源되는 것이므로 電波管理局 全職員은 勿論이고 遞信部 本部의 高位層도 이 條約에 享通함이 바람직하다. 特히 遞信部 予算担当者나 經濟企劃院 및 國會議員들도 電波管理局은 電話局과 같은 營業機關이 아님을 直視하여 一般會計로 轉換시키고, 充分한 予算을 割當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北傀는 1975年 合法를 假裝하여 國際電氣通信聯合에 會員國으로서 加入한 後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間接侵略을 恣行하기에 이르렀는 바, 1979年 世界無線通信 主管庁會議에서는 大韓民國이 使

用中인 無線通信用 國際呼出符字列 中에서 HMA~HMZ를 그들의 專用으로 넘어 갖기에 이르렀다.³⁴

뿐만 아니라, 北傀의 不法電波에 의한 放送 紊亂에도 對備하여야 될 것이므로 國家는 安保面에서도 電波監理組織을 보다 強化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進行中인 電氣通信公社의 發足 爾後에는 郵便公社의 發足도 予期할 수 있으므로 遞信部의 最後 構想은 電波管理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電波監理의 重要性은 贅言不要인 所以이다.

2. 日本 電波監理와의 比較

(1) 機構上의 檢討

우리 國家와 日本國의 電波監理行政의 比較 分析을 各 機構表(表3 및 表4)의 對照로써 試圖한 즉, 우리의 發展方向이 發見될 것 같다.

즉, 日本의 電波監理局을 標範으로 한다면, 應當히 우리 放送(有線放送도 包含함)은 文化公報部 所管에서 電波管理局으로 統合되어야 하겠고, 無線從事者의 資格檢定業務(通信系列: 電波通信 및 無線設備技師(技能士))도 韓國技術檢定公團에서 電波 管理局으로 還元되어야 할 것이다.

通信의 <미디어>面이나 通信人力管理面 및 行政의 單元化에 의한 能率向上이라는 뜻에서 이런 通信行政의 復元은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宇宙通信에 관한 中央課 組織의 新設 및 電波研究所의 擴張課題만은 우리 電波管理行政의 發展의 進路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第一 時急한 것은 現在의 外局을 內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他關係部處(文化公報部長官, 海運港灣庁長 等)와 均衡이 維持되도록 電波監理의 責任者의 階級을 1級(庁長, 次官補 또는 室長)으로 格上 優待하는 일이라고 希望된다.

(2) 人力面의 專門性 比較

電波行政은 그의 技術性으로 因하여 많은 專門家가 必要하며, 또한 이들의 合力에 因하여 推進됨이 適當하다.

日本의 郵政長官 直屬으로는 電波監理審議會(議員 5名) 및 電波技術審議會(委員 25名 以內)가 있어 諮問을 하는 同時에 司法上의 初審에 該當하는 機能³⁵

29) 王志均, 電波에 관한 定義의 解釋, 大韓電波協會 會報, 1966年 第20号, pp. 17~24

30) 서울明文堂, 명문국어대사전, 1969, p. 182

31) 電波管理法, 法律 第3308号, 1980年 12月 31日, 第75條의 4를 改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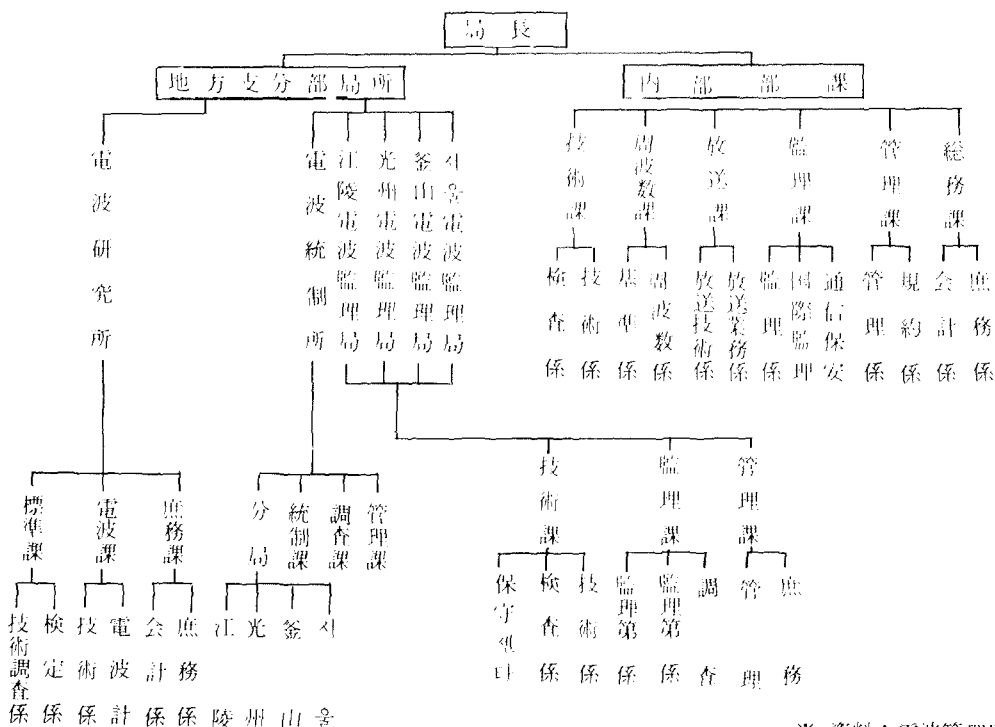
32) 명문국어대사전, 前掲書, p. 42

33) 國際電氣通信協約: 條約 第384号, 1976年 2月 9日 公布

34) 電波時報, 1980年 第1号, 前掲書, p. 25

35) 日本電波法, 第7章(異議申立과 訴訟), 同 第7章 92의 (電波監理審議會)

〈表3-1〉 電波管理局 機構圖
(遞信部 外局)



※ 資料：電波管理局職制

까지도 併有해 하고 있다.

이는 電波에 對한 專門性을 尊重한 까닭이다. 그 外로 電波監理局에는 많은 電波의 專門家를 위한 職責을 두고 있는 바, 이도 電波의 專門性에 基因한 것이다. 즉 局長下의 審議官, 無線通信部長, 監視部長, 放送部長, 各課長, 同補佐, 調査官, 無線局檢査官, 電波監視官, 檢定官, 各課의 專門職, 企画調査室長, 情報處理室長, 難視聽對策室長, 依搬障害防止係長等이 이에 該當하는 바, 우리 電波管理局에도 電波의 專門性이 發揮될 수 있는 職責이 많이 지게 될 必然而 亦하여도 本部 各課內에는 專門職 1名만이라도 있어

되겠다. 또한 各地方 電波監理局에도 各 電波監視官, 電波檢査官, 電波試驗官이 主任級과 平級으로 나뉘어 지 있으므로³⁶⁾ 우리 나라에서도 各地方 監理局에는 電波監視官 1名만이라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總務處가 主管하는 公務員法 및 公務員試驗令의 改正이 必須인 바, 그中인 [職群: 通信]內에 새 職列로서 通信監理官(通信士職) 및 通信 研究官의 두 가지만이라도 增補하고 各階級도 1級까지 昇進할 수 있도록 時急히 改正되기를 促求하여 마지 않는다. 外務公務員法은 改正되어 通信職列이 1級까지 昇進될 수 있게 되었다.³⁷⁾

36) 電波時報, 1979年 3月號, 前掲書, pp. 72~73
電波組織年表: 1975. 4. 1. 地方電波監理局長, 主任電波檢査官, 電波檢査官, 主任電波試驗官, 電波試驗官, 主任電波監視官及び 電波監視官を置く(以下「專門官制度」といふ, 以下 同じ)

37) 外務公務員法: 1981. 3. 14, 法律 第3384号
☆ 第2条 第1項: 外務公務員을 다음과 같이 区分한다.

1. 外交職公務員
2. 特任公館長
3. 外務行政職公務員
4. 外信職公務員

☆ 第4条 第12項: 外務公務員의 階級은 다음 各号와 같다.

1. 外交職公務員 特1級, 特2級과 1級 까지 5級
2. 外務行政職 및 外信職公務員 1級 까지 9級

電波의 專門性이 尊重되어야 올바른 電波 行政이 될 것이며, 올바른 電波行政이 되어야만 우리 遞信 行政은 참된 發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 말 : 또 다른 代案을 模索하며

待望의 80年代, 躍進하는 우리 第五共和國의 改革 事業으로서 遞信部의 中央機構가 革新되는 것은 참으로 期待되는 일이다.

公衆電氣通信事業이라는 企業을 電氣通信公社에 委任하고 遞信部는 政府로서 通信의 監理만을 하게 되는 것은 行政의 主体性 確立上 참으로 進化된 일이라고 讚揚된다.

通信은 社會의 動脈일 뿐 아니라, 國民은 通信 없는 現代社會生活를 營爲할 수 없는 故로 通信 監理 行政의 中央機構 改革事業은 實로 莫重한 國家大事의 하나인 것이다.

이 聖業 對備에 資하기 위하여, 筆者는 이미 遞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電波管理組織의 強化 및 格上이 必要함을 主張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此際에 通信人의 한 사람으로서 그 主張을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여 敢히 그 發展 方向을 提示코자 하였다.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價值이며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價值인 바, 이의 一致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研究로서 先進國의 行政先例를 文獻에 의하여 追求키로 하였다.

美國의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民營이고 이에 對한 規制도 委員會制임에 反하여, 日本은 電信電話公社 運營으로서 郵政省이 監理하고 있음이 判明 되었기, 이 研究는 主로 日本國의 該當行政을 比較資料로 採하기로 決定하였다.

먼저, 電氣通信政策局의 發展方向을, 電氣通信과 政策의 定義 및 來歷부터 探究한 後 우리 나라 該局의 任務方向을 引出하였고 아울러 傘下 組織에 關한 日本의 實例를 調査 報告하였다.

電波管理의 發展方向도, 電波 및 管理의 定義부터 檢討한 後 韓國과 日本의 該局 機構表를 作成하여 比較 分析하였던 바, 放送(有線放送 包含)과 無線 從事者 檢定 業務는 他部處에서 電波管理局으로 還元됨이 바람직하며, 하루速히 宇宙通信 業務開始와 電波에 關한 研究業務 強化를 하여야 되겠다는 結果를 찾기에 이르렀다.

第一 먼저, 電波行政의 專門性이 尊重되도록 公務員

法 등이 改正되어 通信 職列속에 通信監理官 및 通信研究官을 增補함이 最時急 課題라고 論決되었다.

以上의 切實한 建議案은 <라스웰>의 政策決定段階中的 初環인 「情報分析」에 不過한 것인즉 <세미나> 등에 의한 支持獲得과 代案策 및 司祭의 指導者에 의한 修正補完이 期待된다. 이는 다시 feed back 理論으로서 “政策實現”, “終局”, “評價” 및 “情報分析”으로 模索 發展되어야 하겠다.

더마, 이 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 促進에 寄與될 것으로 믿어진다.

參 考 文 獻

1. 제헌법령집, 제3부, 1977
2. 국제전기통신협약(조약 제 564호), 1976. 2. 9. 관보 제 7267호
3. 俞鍾午 外, 新六法, 民衆書館, 서울, 1968.
4. 金曾漢, 法學通論, 暮声文化社, 서울, 1960.
5. 朴觀淑, 新版 國際法, 法文社, 서울, 1976.
6. 新井隆一 外, 行政法, 有斐閣, 東京, 1980.
7. 電波法令集, 電波振興會, 東京, 1981.
8. 通信白書, 郵政省, 東京, 1980.
9. F. HEADY, 徐元宇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서울, 1976.
10. 俞鍾午,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11. 便覽 郵政省, 株式會社 教育社, 東京, 1979.
12. 三浦一郎, 通信政策의 課題와 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東京, 1974.
13. 電氣通信八十年史, 遞信部, 1966.
14. 명문숙이대사전, 서울명문당, 1969.
15. 金格澤, 通信事業經營概論,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75.
16. 金忠烈, 國際郵便概要, 尚玄文化社, 서울, 1966.
17. 王志均, 電波管理法講義, 海綠社, 서울, 1974.
18. 月刊, 電信電話研究, 1976-1981,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 電波時報, 1976-1981, 電波振興會, 東京
20. 國際電信電話, 1976-1981, 國際通信文化協會, 東京.
21. FRED W. RIGGS, 朴東緒 外 訳, 新行國行政論, 大韓教科書株式會社, 서울, 1975.



王 志 均 Jeong Kyoon-wang 王會員
 1923年 7月25日生
 1945年 8月 : 舊 官立朝鮮無線電信講
 究所卒業
 1977年 2月 : 建國大學校行政大学院 行
 政學科(通信行政專攻)修了
 1950年 1945年 : 交通部技士(航空及 鐵道
 通信)
 1951年 ~ 1959年 : 大韓海運公社(等) 通
 信 長(海上通信)
 1960年 ~ 現在 : 光云工科大学教授, 同大學附設通信科學研究所
 長, 本學會常任理事